

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0. 8. 4.>

계열별 구분(제2조제9항 관련)

대 계열	포함되는 소계열
인문·사회계열	어학·문학·사회 및 신학 등
자연과학계열	이학·해양·농학·수산·간호·보건·약학 및 한약학 등
공학계열	공학 등
예·체능계열	음악·미술·체육 및 무용 등
의학계열	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수의학 등

비고

1. 의예과·치의예과·한의예과·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.
2. 계열 간의 연계·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.